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3. 5.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9년 2월 15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9. 3. 4.)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야영 및 수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우리 구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 기능 및 업무 규정(안 제4조)
- 운영 및 관리위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1조)
- 사용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 운영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제16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청소년야영장의 기능 및 업무, 운영 및 관리위탁, 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승인은 예약순서대로 하며, 이용기간은 2박 3일 이내로 하는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청소년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 또한, 청소년야영장 개원 및 운영에 앞서 청소년야영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청소년야영장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이용신청 기간과 사용료 감면사항 및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나. 수정내용

- 안 제7조 제5항을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성수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 안 제13조 제1항 제2호 카목 중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 안 제14조 제3호 각 목 중  
가목을 “사용일 1개월 전까지: 전액”으로 하고,  
나목을 “사용일 15일 전까지: 50퍼센트”로 하고,  
다목을 “사용일 1일 전까지: 20퍼센트”로 한다.

##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76 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19. 3. 4.

제안자: 허홍석 의원 외 1명

## 1. 수정이유

- 청소년야영장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이용신청 기간과 사용료 감면사항 및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수정내용

- 안 제7조 제5항을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성수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 안 제13조 제1항 제2호 카목 중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 안 제14조 제3호 각 목 중  
가목을 “사용일 1개월 전까지: 전액”으로 하고,  
나목을 “사용일 15일 전까지: 50퍼센트”로 하고,  
다목을 “사용일 1일 전까지: 20퍼센트”로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5항을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성수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 제1항 제2호 카목 중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안 제14조 제3호 각 목 중 가목을 “사용일 1개월 전까지: 전액”으로 하고, 나목을 “사용일 15일 전까지: 50퍼센트”로 하고, 다목을 “사용일 1일 전까지: 20퍼센트”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b>제7조(이용신청) ⑤</b> <u>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달 1일부터, 단 체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u></p>	<p><b>제7조(이용신청) ⑤</b> <u>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성수기는 예외로 한다.</u></p>
<p><b>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b> (...) 2. (...) 카. 단체: <u>20퍼센트</u></p>	<p><b>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b> (...) 2. (...) 카. 단체: <u>10퍼센트</u></p>
<p><b>제14조(사용료의 반환)</b> 3. (...) 가. <u>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u> 나. <u>사용일 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80퍼센트</u> 다. <u>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50퍼센트</u></p>	<p><b>제14조(사용료의 반환)</b> 3. (...) 가. <u>사용일 1개월 전까지: 전액</u> 나. <u>사용일 15일 전까지: 50퍼센트</u> 다. <u>사용일 1일 전까지: 20퍼센트</u></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이하 “청소년야영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690-1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야영장”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의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이용자가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청소년야영장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사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5. 야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청소년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①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다만, 청소년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리 이용승인을 얻어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은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의 청소년야영장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청소년야영장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승인은 예약순서대로 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단체 또는 소재지 주민 및 단체의 이용

5.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⑤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성수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청소년야영장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등)** 청소년야영장은 2박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제한,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을 중단하였을 때

이용자는 즉시 해당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권리의 양도 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사용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사용료)** ①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예약하고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예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해당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이용하고자 할 때: 전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전액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전액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50퍼센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퍼센트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50퍼센트

사. 65세 이상인 사람: 50퍼센트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0퍼센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차.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3세 이하여야 한다): 50퍼센트

카. 단체: 10퍼센트

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 10퍼센트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이용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 중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1. 청소년야영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청소년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야영장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일 1개월 전까지: 전액
  - 나. 사용일 15일 전까지: 50퍼센트
  -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20퍼센트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야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1항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76 호
----------	--------

제출연월일: 2019. 2.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야영 및 수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우리 구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기능 및 업무 규정(안 제4조)
- 다. 운영 및 관리위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1조)
- 마. 사용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 바. 운영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제16조)
-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동의함
- 라. 입법예고(2019. 1.17. ~ 2. 7. / 21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세출예산 순증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반
2. 비용추계 기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 근로자 3명(청양군 주민),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 비용추계기간: 12개월(2019.1.~12월)
  - 비용추계내역: 기본급+보험료+소모품구입+공공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230,919	
기본급(봉급)	78,912	기간제 근로자 3명(영등포구 생활임금 기준) 주차수당+월차수당
보험료	8,009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소모품구입	81,480	사무관리비(각종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등)
공공운영비	57,518	각종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5,000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사용료 수입	97,725	98,702	99,689	100,605	101,611	498,332
	소계(a)						
세출	인건비(보수)	86,921	88,659	90,432	92,240	94,084	452,336
	일반운영비	143,998	146,877	149,824	152,820	155,876	749,395
	소계(b)	230,919	235,536	240,256	245,060	249,960	1,201,731
□ 총 비용(a-b)		-133,194	-136,834	-140,567	-144,455	-148,349	-703,399

####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민간							
기타(구비)		230,919	235,536	240,256	245,060	249,960	1,201,731
합계		230,919	235,536	240,256	245,060	249,960	1,201,731

#### 6. 추가의견

- 없음

####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국 총무과 정장배
연 락 처	02-2670-396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이하 “청소년야영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690-1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야영장”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의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이용자가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청소년야영장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사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5. 야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청소년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①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다만, 청소년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리 이용승인을 얻어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은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의 청소년야영장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청소년야영장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승인은 예약순서대로 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단체 또는 소재지 주민 및 단체의 이용
  5.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 ⑤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달 1일부터, 단체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청소년야영장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등)** 청소년야영장은 2박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제한,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을 중단하였을 때 이용자는 즉시 해당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권리의 양도 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사용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사용료)** ①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예약하고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예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해당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이용하고자 할 때: 전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전액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전액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50퍼센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퍼센트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50퍼센트

사. 65세 이상인 사람: 50퍼센트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0퍼센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차.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3세 이하여야 한다): 50퍼센트

카. 단체: 20퍼센트

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 10퍼센트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

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이용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 중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1. 청소년야영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청소년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야영장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80퍼센트
  - 다.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50퍼센트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야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1항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1】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이용 정원**

구 분	면 적	객실 수	기 준 인 원	추 가 인 원	비 고
객실	48.6㎡	1실	8명	2명	
	33.7㎡	10실	4명	2명	

※ 기준 인원이 초과할 경우 추가인원 내에서만 입실가능

【별표2】

##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1. 일반객실

(단위:원)

시 기	실	영등포구민 (영등포구 소재 공공기관·단체) 및 청소년야영장 소재지 주민	타지역 주민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4인	50,000	85,000	성수기: 7.15.~8.25.
	8인	80,000	136,000	
비 수 기 (성수기, 주말 외)	4인	40,000	68,000	주말: 금~토 및 공휴일 전일
	8인	60,000	102,000	

※ 비고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를 말한다.

(성수기 기준 변동 시 예약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

2. “주말”이란 금요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3.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한다.

4. 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입실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5. 침구류(이불, 요, 베개 등)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세트당 5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6.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는 청소년단체의 수련활동 극대화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2. 제1호 외의 시설

(단위:원)

시 설	구 분	기 준	이 용 요 금	비 고
야영장(데 크) 야영장(글램핑)	개소	1박	10,000 50,000	타지역 주민 17,000 타지역 주민 85,000
다목적실	실	전 일 4시간 2시간	200,000 100,000 60,000	
세미나실	실	전 일 4시간 2시간	120,000 60,000 40,0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